

2024년 상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직종	근무기관	채용인원	담당업무	응시가능지역
국도관리원 (도로보수원)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3명	도로의 유지 및 보수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2명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홍천군, 인제군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1명		정선군
국도관리원 (운행제한 단속원)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1명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 등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1명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8명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합격자통보방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1인당 1건의 응시원서만 제출가능. 사무소 및 직종간 중복하여 제출 시 무효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가. (담당업무)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일반국도 상의 도로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 등

- 도로보수원 :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제설·제초 작업 등
- 운행제한단속원 :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장착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업무 등

나. (근무지역)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채용직종	근무기관	근무지역(세부)
국도관리원 (도로보수원)	홍천국토	- 기동보수반 2명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 현지 국도관리원 1명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인제군 기린면 하답리(국도31호선)
	강릉국토	- 기동보수반 1명 ※ 근무지역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내 ①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국토 관내 지역에서 작업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평창군, 홍천군) ② 제설대책 기간(11월~4월)에는 관내 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 현지 국도관리원 1명 ※ 근무지역 : 양양출장소 관내 ①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국토 관내 지역에서 작업 (양양군, 속초시) ② 제설대책 기간(11월~4월)에는 관내 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정선국토	- 기동보수반 1명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채용직종	근무기관	근무지역(세부)
국도관리원 (운행제한 단속원)	홍천국토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강릉국토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정선국토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 * 현지 국도관리원 : 일정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임무수행
기동보수반 :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통합운영, 제설대책 기간(11월~4월)에는 관내 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 ※ 해당 근무지역은 차후 작업환경 등 여건에 따라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 순환배치 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 현역 복무 중인 자(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포함)가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본 채용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봄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응시가능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
-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바.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업무 관련 자격증·면허 소지자 ☞ **서류심사에만 반영**

< 업무 관련 우대 자격증·면허 >

구 분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자격증 (1개당 가점 3점 부여)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 용접기능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이상 - 전기기능사 이상 - 건설기계조종면허(지게차)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화물운송종사자격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면허 (가점 3점)	- 1종 대형 운전면허 - 1종 특수 운전면허	- 1종 대형 운전면허

* 상위 자격증과 하위자격증 모두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운전면허 복수소지자는 1개의 면허만 인정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서류심사에만 반영**

구 분	범 위
저소득층 (가점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장애인 (가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점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정선국토 운행제한단속원)에만 적용하며, 해당 우대요건은 서류 및 면접전형 모든 단계에서 반영**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 합격최저점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국가관 및 사회성, ②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등 4개 요소를 각각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
 -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
 -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면접점수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
 - ** 채용계약포기·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차순위 득점자를 대상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4. 25.(목) ~ 5. 8.(수) 18:00	'24. 5. 24.(금)	'24. 5. 30.(목) 또는 5. 31.(금)	'23. 6. 10.(월)

가.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wrocm> 알림마당 → 인사/채용 → 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라.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wrocm>)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응시원서를 출력
- (접수기간) 2024. 4. 25.(목) ~ 2024. 5. 8.(수) 18:00
 - * 토, 일요일, 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 방문접수는 '24. 4. 25.(목) ~ 5. 8.(수)에 한하여 월일과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5.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우)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 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도로보수원/운행제한단속원) 응시원서 재증' 표기
 - ** e-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직접 배부

8. 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사진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4cm) - 자격증 등 우대사항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2.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자필서명 필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자필서명 필수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자필서명 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부	○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 ○ 주소전입일(또는 변동일)이 명시되도록 발급
7.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공고일(2024. 4. 24.) 이후 유효한 서류에 한함
8.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2024. 4. 24.) 이후 유효한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9. 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등 근무조건

가. (임용예정일) '24년 7월 1일(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근로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

다. (보수)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호봉제 실시)

- 2023년 1호봉 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약 2,060천원(세전)

-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별도지급

라. (근무시간) 주5일, 09:00 ~ 18:00 (주 40시간)

* 운행제한단속원은 직무특성 상 교대근무 실시함, 교대근무 형태와 관련된 내용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국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근무지역)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2p 참조)

바.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지점수 지급

사. (기타사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5호, '23.10.12.)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10.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단일 응시(1개 기관 및 1개 직종)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른 **일정의 단축 또는 연장 등의 일정** 변경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 사. 면접시험 결과는 면접자(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공개 가능합니다.
-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 담당자(☎033-769-57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직종		근무지원 기관		성명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직무수행 계획					
2024. . . 응시자: (서명)					

* 자기소개서는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 · 이용목적)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병역사항, 자격·면허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보유 · 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 이용목적)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34조제5항
- (보유 · 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 이용목적)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 (수집항목) 기초수급 등 우대요건 관련 사항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목적)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 (제공받는 자) 자격·면허증 등 관할 기관
- (제공항목) 자격·면허증 등 증빙서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2024년 월 일

작성 자 : 자 필 기 재 (서명 또는 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4년 상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심사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